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시 기	비 고
1. 전기사업용전기 설비 : 기력, 내 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수력 (양수), 풍력, 태 양광,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 및 무정전전원장치 발전소(구역전기 사업자의 송전·변 전 및 배전설비 를 포함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2) 가스터빈·보일러·열교환기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 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한다), 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 (3) 수차·발전기 계통 (4) 풍차·발전기계통(토목 기초 를 포함한다) (5) 태양광설비 (가) 태양광·전기설비계통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사업 허가 당시 「공간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 답, 과수원, 임야, 염전 지역(「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간척지였던 경우에 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 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 답, 과수원, 임야 또는 염 전으로 등록된 지 30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으로 한정 한다)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	4년 이내 2년 이내 4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2년 이내	(1)부터 (4)까지 의 설비에 부속 되는 전기설비 로서 사용압력 이 제곱센티미 터당 0킬로그 램 이상의 내압 부분이 있는 것 을 포함한다.

	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 수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6)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7)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1년 이내 (전기저장장치 중 변전소에 설치되는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는 제외)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천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차량에 탑재하여 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다) (나) (가) 외의 설비 2년 이내 (8)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 2년 이내 (9)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로·변전소 4년 이내 (10) 무정전전원장치·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 1년 이내 (나) (가) 외의 설비. 다만, 20킬로와트시 이하의 리튬·나트륨계 배터리 및 70킬로와트시 이하의 납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 2년 이내		
2. 자가용전기설비			
가. 발전설비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4년 이내	(1)과 (2)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

화력 및 수력, 태양광,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 및 무정전전원장치 발전소(비상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2) 가스터빈(공해방지설비 및 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2년 이내	력이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수차·발전기 계통	4년 이내	
	(4) 풍차·발전기 계통	4년 이내	
	(5) 태양광·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6)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7)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	1년 이내	
	(나) (가) 외의 설비	2년 이내	
	(8) 무정전전원장치·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	1년 이내	
	(나) (가) 외의 설비. 다만, 20킬로와트시 이하의 리튬·나트륨계 배터리 및 70킬로와트시 이하의 납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는 제외한다.	2년 이내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 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자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2년마다 2개월 전후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 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전기 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 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단 독으로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 다)	3년마다 2개월 전후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 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 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 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 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4년 이내	

비 고: 1.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시기 조정 사유 발생 시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
에서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이와 연계된 비상부하설비를 포함한다.